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1. 17.

#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고성군의 문화예술·관광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 명칭 변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 현행: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변경: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나. 재단법인 설립 목적(안 제1조)

- 고성군의 문화예술·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의 문화 복지 증진

### 다. 법인의 설립 및 운영(안 제2조)

-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

### 라. 법인의 명칭 변경(안 제3조)

- 현행: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 변경: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 마. 재단의 사업(안 제4조)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
-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등
- 국가·경상남도·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바. 재단의 재산(안 제5조)

- 고성군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사. 재단의 수익사업(안 제6조)

-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 시행

아.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
-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시설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자.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고·검사, 공무원의 파견(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차.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1조)

카. 엑스포 입장료 감경(안 제12조)

- 고성군민에 대해 엑스포 입장료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

타. 보상금 등 지급(안 제13조)

- 엑스포 입장권 현장 구매자 및 고성군 관내 숙박업소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상품권 지급
-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 제공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확보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40436(2023. 10. 23.)]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371호
  - 가)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0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명칭)**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자원조달, 행사운영
2.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4.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9.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10. 국가·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된다.

**제12조(입장료의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경상남도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등)** ① 재단은 엑스포 현장입장권을 구입한 자 및 군의

숙박업소를 이용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받은 군민은 제외한다.

②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 포괄승계한다.

##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조항: 제7조(업무의 위탁)  
 나. 관련조문: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주요사무

-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자원 조달, 행사운영
-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전시 등)의 기획 및 운영
-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 국가·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2) 재단인력

- 2024년: 18명(사무국장1, 법인직원 13, 파견공무원 4)
- 2025년 이후: 20명(사무국장1, 법인직원 19)

##### 3) 주요재원:

- 세입: 출연금, 영업수익금(엑스포, 당항포관광지), 이월금 등
- 세출: 엑스포사업비, 인건비, 시설물 관리비, 수익사업 경비 등

나. 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합계	
총 비용(a - b)	0	0	0	0	0	0	
세출	법인운영	600	840	860	880	900	4,080
	엑스포 사업비	2,500	2,200	2,200	2,200	2,200	11,300
	관광지 운영	3,300	3,300	3,500	3,500	3,500	17,100
	잉여금	2,400	2,560	2,500	2,520	2,520	12,500
	소계(a)	8,800	8,900	9,060	9,100	9,120	44,980
세입	출연금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영업수익	4,300	4,500	4,500	4,600	4,600	22,500
	전년도 이월금	2,500	2,400	2,560	2,500	2,520	12,480
	소계(b)	8,800	8,900	9,060	9,100	9,120	44,980

※ 매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를 전제로 비용추계

2024년 재단인력: 18명(사무국장, 파견 4, 법인 13)

2025년 이후 재단인력: 20명(사무국장, 법인 19)

3. 관련의견

- 관광지 운영 수익금은 관광지 수탁운영 경비 집행
- 출연금 확보: 관광지 운영에 따른 부족 예산에 한해서 확보
- 엑스포운영 수익금: 차기 엑스포사업비 및 법인 운영비 집행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오 세 옥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 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계
재원조달		8,800	8,900	9,060	9,100	9,120	44,980
의존 재원	소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출연금(군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자체 수입	소 계	6,800	6,900	7,060	7,100	7,120	34,980
	영업수익	4,300	4,500	4,500	4,600	4,600	22,500
	이월금	2,500	2,400	2,560	2,500	2,520	12,48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출 연 금: 군비 100%
- 영업수익: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및 관광지운영 수입
- 이 월 금: 전년도 이월 사업비

3. 관련의견: 없음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오 세 옥

## 참고

## 관계법령(발췌)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

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